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설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3. 제안이유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안 제3조)

나.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9조)

- 충북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평균금액으로 인상

다.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결제일 변경(안 제11조)

라.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안 제9조)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 위

약금 면제규정 신설(안 제13조)

바.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안 제14조)

- 위약금 및 배상금 최대 20%로 일원화

##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에 맞게 평균금액으로 상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약금 최소화, 면책기준 구체화 등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연휴양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평균수준에 맞춰 비수기 5.3%, 성수기 22.8%(평균 14.1%)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음.

※ 전국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황 (20.10.26.)

(단위 : 원)

구 분	20~23㎡	24~28㎡	30~36㎡	50~55㎡	56~69㎡	71~84㎡
조령산	60,000 (42,000)	60,000 (42,000)	80,000 (56,000)	110,000 (77,000)	140,000 (98,000)	140,000 (98,000)
충북평균 (공립)	65,000 (42,500)	70,300 (43,500)	85,350 (57,250)	129,100 (83,700)	166,170 (103,000)	223,250 (148,370)
국유림		73,000 (40,000)	94,000 (52,000)	154,000 (87,000)	185,000 (110,000)	214,000 (145,000)

※ ( ) 비수기

- 안 제3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기준을 장애인의 경우 기존 1~3급과 4~6급에서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7급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에 따라 위약금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 위약금 면제하도록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고, 공공재의 특성과 도민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최대 시설사용료의 80% 위약금에서 20% 이내로 경감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1. 15.~'21. 2.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으로 적용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위약금 처리 면제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명시하고, 숙박형 공공시설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시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사용료의 20% 이내로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